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5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로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명확화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과 용어 정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용료 감면 확대·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별표 2,3의 비교)

다.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정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라.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9.22.~10.12./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을 높여 구민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을 구체화하고 시설의 사용, 강습프로그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 해석이 명확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및 안 별표 2,3의 비고란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학교의 체육활동 5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30% 감면 등 감면 대상을 확대, 재정비함.
- 안 별표1은 환경개선에 따른 체육시설 규모와 주요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안양천 체육시설 규모 축소는 축구장 3면 중 1면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것에 기인함.
-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1조는 기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약칭 사용 등으로 조문을 간결히 함.

○ 검토 결과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이용료)에 대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살펴보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감면대상 확대로 구민의 이용률을 높여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 고 자 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2022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나. 타 법령 명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9.15.~10. 5./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2022.12.31.)이 도래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2023.12.31.)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함.
- 안 제13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함.

○ 검토 결과

- 구민 체육 진흥을 위해 2001년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 영등포지점의 경륜수입금이 재원이었으나 2021년 5월 31일 지점의 운영이 종료되어 수입이 없음.
- 적립된 기금은 현재 2022년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기금 소진 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해당사업이 2023년 완료 가능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기금을 존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이하 생략>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7.04.05, 2010.09.30>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0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0.09.30>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08.11.시행)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9.15.~10.5./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08.11.시행)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
- 안 제5조는 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영등포구 체육회와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을 신설함.
- 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8조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번호 변경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08.11.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 영등포구체육회와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 제정(2022.06.16.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조항 간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 관리 사항을 명확히하여
스포츠클럽의 올바른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명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9.15.~10.5./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2022.06.16.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명과 조문 번호를 개정함.
- 안 제2조는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신설함.
- 안 제5조는 보조금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책임자 운영 및 보조금 관리·운용 관련서류의 관리 의무를 신설함.
- 안 제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 클럽의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원래 「생활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포츠클럽법」이 별도로 제정되고 「생활체육진흥법」의 중복되는 규정이 정리·삭제되었음.
- 이에 조례의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